

## 2022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차 공고

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4월 25일  
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### 1. 사업개요

(지원규모) 65업체

(지원대상)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상 2021. 10. 25. 이후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)

#### 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〉

제2조(정의) “소상공인”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※ 소상공인 범위: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/ (그 밖의 업종)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#### 〈 지원 제외 대상 〉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[별첨 참조]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)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경영환경개선 관련 자부담비용(10% 이상) 미수용 사업자
- 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중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 후 적발된 경우
- 2022년 당진시 경영환경개선사업, 소상공인 애로사항 현장지원사업 및 충남행복가게 선정업체
- 최근 3년 이내(2019~2021)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

## 2. 지원내용

**(지원금액)** 점포환경개선 소요 비용(부가세 포함)의 90% 지원  
(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,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)

**(지원분야)** 아래의 지원 분야 중 하나의 분야 선택(중복 선택 불가)

### 지원 분야

- 옥외간판 교체(단,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 시 지원 불가)
- 내부 인테리어 개선(점포 내 도배, 도색, 바닥공사, 조명공사 등)
- 시설·집기류 교체(음식점 닥트시설 및 테이블 교체) 단, 테이블 교체는 좌식→입식 테이블 교체에 한함
- CCTV,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

## 3. 추진일정

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2. 4. 25.~5. 13.	▶	요건검토 및 현장점검 2022. 5. 16. ~ 6. 10.	▶	선정평가위원회 2022. 6. 13. ~ 6. 17.
검수 및 지원금 지급 2022. 7. 1.~10. 14.	▶	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2022. 6. 22. ~ 9. 30.	▶	선정 결과발표 2022. 6. 22.

※ 추진일정은 현장점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## 4. 신청 · 접수

**(신청기간)** 2022. 4. 25.(월) ~ 5. 13.(금) 18:00까지

**(신청방법)**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(<http://sbiz.cepta.or.kr>) 지원사업  
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

〈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제출서류〉

제출서류	유의/참고사항
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신청서	서식 1
② 추진계획서	서식 2
③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	서식 3
④ 사업자등록증(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)	PDF 스캔본 제출
⑤ 2021년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	PDF 스캔본 제출
⑥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(고용인원이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고용인원이 있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PDF 스캔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( 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www.nhis.or.kr</a> )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( <a href="http://www.4insure.or.kr">www.4insure.or.kr</a> )
⑦ 견적서 및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	
⑧ 지방세 납세증명서	PDF 스캔본 제출
⑨ 옥외광고업등록증	옥외간판교체 희망기업에 한함
⑩ 가점 확인서류	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증

※ 제출서류 ①~⑥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(서명누락 포함) 하오니 신청서 제출 시 확인 바랍니다.

**(접수방법)** 이메일, 우편 및 방문접수

○ (이메일) [sbizcenter@naver.com](mailto:sbizcenter@naver.com)

※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'경영환경개선(업체명)' 기재

※ 참가신청서 및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

○ (우편) 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,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담당자

○ (방문접수)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,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
401호(소상공지원팀)

## 5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### (평가 및 선정)

- (요건검토)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
- (현장점검) 제출서류 및 사업장 면적 등 확인
  - ※ 제출서류 검토 후 경영현황(매출-업력-시설-고용) 배점 결과(가점 포함)에 따라 서면 평가대상(지원 규모의 2배수)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
- (서면평가)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
- (선정기준) 평가결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※ 일부 지역에 선정업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·군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율에 따른 지원업체 선정
- (평가항목) 정성평가(50점, 추진계획의 적정성, 지원의 필요성), 정량평가(50점)
- 충청남도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(2022년 수료자에 한함)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수 5점부여(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)
  - ※ 시·군별 사업체 수 비율(2019년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에 따른 지원업체 선정

구분	충청남도	천안시	공주시	보령시	아산시	서산시	논산시	계룡시
지원업체	65	19	3	4	8	5	4	1
비율(%)	-	30.0%	5.2%	5.3%	12.5%	7.4%	6.7%	1.4%

구분	당진시	금산군	부여군	서천군	청양군	홍성군	예산군	태안군
지원업체	5	3	2	2	1	3	2	3
비율(%)	7.6%	3.5%	2.9%	2.8%	1.8%	4.9%	4.1%	3.9%

### (선정취소)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-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
- 지정된 과제 수행기간동안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- 과제 부실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# **(변경 및 포기)**
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및 수행업체 변경 발생 시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출[서식8]
- 제작비용이 하향된 경우 지원금은 하향된 비용으로 감액 변경되거나 상향된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
- 선정 후 지원 분야 변경은 불가
- 지원 포기의 경우 시 포기신청서 제출[서식9]

### **(수행업체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식)**

- 수행업체는 과제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상 '업태'와 '종목'에 관련 분야가 명시된 외주업체 선정
- 수행업체는 지역업체를 1순위로 고려하여 선정함을 권고함
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
-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
- 지원비 지급은 완료보고서 검토 완료 후 수행업체로 직접 지급
-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
## **(기타 유의사항)**
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**(문의처)** 충청남도경제진흥원(보부상 콜센터) ☎ 041-424-4000

【별첨 1】

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9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<b>&lt;비고&gt;</b>		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		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		

【별첨 2】

**지원제외 업종(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)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☞ 산업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 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※ 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